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판단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 승계 전·후 같은 업종이며, 승계 후 10년 이상 사업 유지시 ‘동일성’을 인정
- 나.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신설(안 제5조의6)
- (사업개시 시점기준) 원칙적으로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이 기준이나,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계속유지 판단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 영위해야 하나,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등)는 예외
 - (차별성 평가기준) ▲인지도,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성, 시장성, 신뢰성, 독창성, ▲지재권 보유 등 평가
 - (기여도 평가기준) ▲관련 법규(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준수 여부, ▲장기고용 여부 및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적 기여도 평가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 신설(안 제5조의7)

-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행정처분,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채납 등으로 정의

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절차 신설(안 제5조의8)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마. 백년소상공인 지정표시 및 명칭의 무단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나목)

- 법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24. 4. 18. ~ 5. 28.)

대통령령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사업기간 계속 유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사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서 “차별성”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고유한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

성, 독창성 정도

3.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등

⑤ 법 제16조제2항에서 “기여도”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2. 장기고용 여부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기부 등 사회회적 기여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정 유효기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혹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이력이 발생한 경우

2. 지정 유효기간 이내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채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5조의8(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

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나.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신 설>

계속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사업기간 계속 유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사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서 “차별성”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고유한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독창성 정도
3.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등

⑤ 법 제16조제2항에서 “기여도”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

<신 설>

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2. 장기고용 여부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기부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정 유효기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혹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이력이 발생한 경우

2. 지정 유효기간 이내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채불, 고액상습채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신 설>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1.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생략)	(생략)			
나.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100	200	300

3.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5조의8(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생략)	(생략)			
나.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100	200	300
다. 현행 나목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연 락 처	(044) 204 - 7280